

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정 2004. 1.28. 개정 2006. 2.24 개정 2007. 6.26 개정 2009. 2. 2 전부개정 2012.12. 7.
개정 2015. 7. 7. 개정 2019. 9. 26. 개정 2019. 12. 16. 개정 2020. 7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 및 순천대학교 연구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산학협력사업 및 연구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하부조직간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한다.

제3조(업무) 산학협력단은 「순천대학교 학칙」 제5조의2제1항 및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.

제3조의2(위원회) 산학협력단에 운영위원회, 산학협력위원회, 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.

제2장 조직

제4조(단장 등) ① 단장은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19. 12. 16., 2020.7.1.)

1. 산학협력과
2. 연구진흥과

3. 지식재산관리센터
4. 현장실습지원센터
5. 산학협력교육센터(개정 2020.7.1.)
6. 대학,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

② 산학협력단에 두는 하부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9.12.16., 2020.7.1.)

1. 산학협력과: 과 소관 업무(개정 2020.7.1.)
2. 연구진흥과: 과 소관 업무 및 산학협력위원회 운영(개정 2020.7.1.)
3. 지식재산관리센터: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
4. 현장실습지원센터: 학생현장실습 업무(개정 2019.12.16.)
5. 산학협력교육센터: 산학협력 교육 및 사업 수행(개정 2020.7.1.)
6. 소속 사업단(센터):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

③ 지식재산관리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산학협력교육센터의 장 및 사업단의 사업총괄책임자는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면직한다.(개정 2020.7.1.)

④ 산학협력단에 소속되는 사업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장 회계관리

제6조(회계관리)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부단장, 산학협력과장, 연구진흥과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 (개정

2015.07.07., 2019.07.17.)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계획 수립
2. 산학협력단정관 및 운영규정 개·폐
3.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·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
4. 산학협력단 및 소속 사업단의 예·결산안
5. 그 밖의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산학협력위원회

제10조(산학협력위원회) ① 이 대학교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부단장과 기업체·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 조성 및 관리
2. 산·학·연·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3. 산·학·연·관 교육훈련 및 학생취업 지원사업 구축
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연구진흥위원회

제13조(연구진흥위원회) ① 연구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산학협력부단장, 산학협력과장, 연구진흥과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구성

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
2. 학술연구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3. 학술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4. 연구진흥 관련 규정 및 지침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학술연구 지원과제 심사에 관한 사항
6. 부속연구소의 설·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연구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1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장 보칙

제19조(시행세칙)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9.12.16.)

부 칙(2012. 12. 0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② 「순천대학교 연구교수 규정」 제3조제3항 중 “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③ 「순천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」 제16조제3항, 제20조, 제23조 중 “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④ 「순천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중 “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⑤ 「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」 제4조제3항, 제6조의3제6항, 제8조제2항 및 제3항, 제9조제3항 중 “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⑥ 「순천대학교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항 중 “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⑦ 「순천대학교 사무분장규정」 제12조제12호 중 “학술진흥위원회”를 “산

학협력단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순천대학교학술진흥위원회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5. 7. 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 7. 17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산학연구지원과장”을 “산학협력과장, 연구진흥과장”으로 하고, “13인”을 “15인”으로 한다.

②부터 ⑨까지 생략

부 칙(2019. 9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2. 1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7. 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